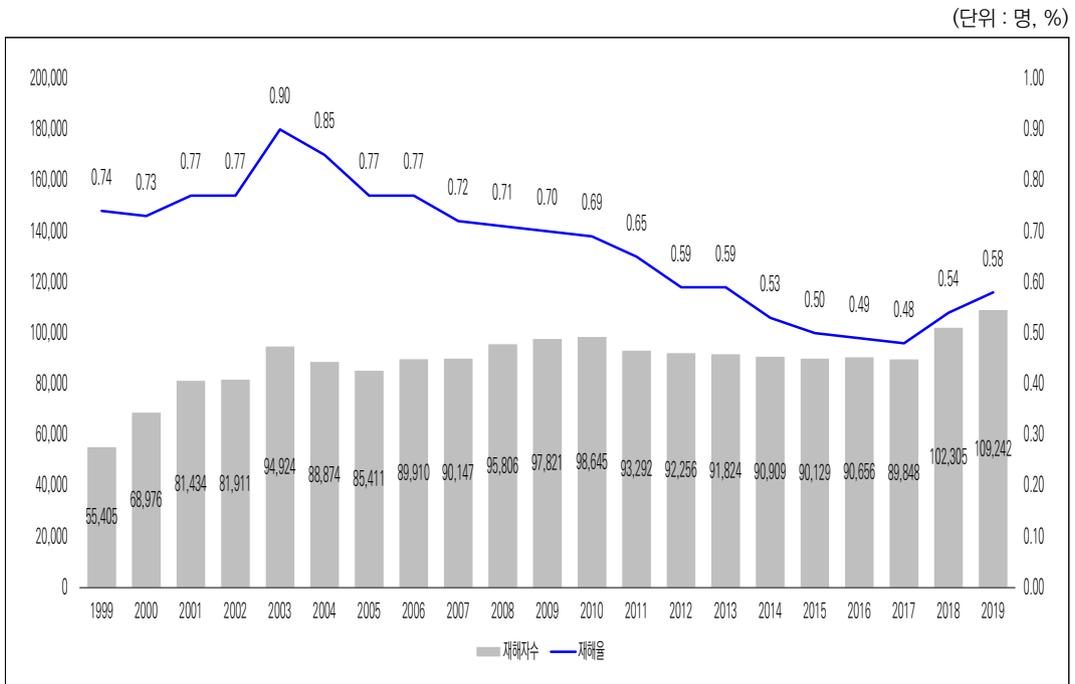


산업재해자 수 및 재해율 추이

-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는 10만 9,242명이고 재해율은 0.58%임.
- －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서 제시한 전체 근로자 수는 2018년 1,907만 3,438명에서 1,872만 5,16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산업재해자 수는 2018년에 10만 2,305명에서 10만 9,242명으로 증가하였음.
- － 산업재해율은 2012년 이후 0.50%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산업재해자 수 및 산업재해율 추이



주 : 재해율은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연도.

- 재해자 수 증가는 2017년부터 추진한 추정의 원칙 도입,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¹⁾ 등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경미한 재해가 은폐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제시된 산업재해자 수 및 재해율 추이는 단순히 증가세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재해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기타의 사업과 제조업, 건설업에서 각각 38.3%, 26.8%, 24.9%가 발생하였음.

-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고 재해 가능성이 높은 업종인 제조업과 건설업은 재해자가 각각 2만 9,274명(26.8%), 2만 7,211명(24.9%)이었음.
- 2018년보다 제조업은 재해자가 1,897명(6.9%) 증가하였고 건설업은 475명(-1.72%) 감소하였음.
- 건설업에서의 감소 원인은 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재해자 수 감소 때문으로 보이며, 2019년 전체 사망자 2,020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517명(25.6%)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음.

〈표 1〉 우리나라 산업별 산업재해율 비교(2018년, 2019년)

(단위 : 명, %)

	2018년			2019년			재해자 수 증감 (증감률)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재해율		
전 체	19,073,438	102,305 (100.00)	0.54	18,725,160	109,242 (100.00)	0.58	6,937 (6.78)	
산 업 별	광업	11,697	2,225 (2.17)	19.02	11,108	2,543 (2.33)	22.89	318 (14.29)
	제조업	4,152,058	27,377 (26.76)	0.66	4,045,048	29,274 (26.80)	0.72	1,897 (6.93)
	건설업	2,943,742	27,686 (27.06)	0.94	2,487,807	27,211 (24.91)	1.09	-475 (-1.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6,967	108 (0.11)	0.14	76,687	111 (0.10)	0.14	3 (2.78)
	운수·창고·통신업	873,232	5,291 (5.17)	0.61	910,585	6,173 (5.65)	0.68	882 (16.67)
	임업	89,751	1,041 (1.02)	1.16	91,682	1,017 (0.93)	1.11	-24 (-2.31)
	어업	5,416	66 (0.06)	1.22	5,121	60 (0.05)	1.17	-6 (-9.09)
	농업	83,540	648 (0.63)	0.78	79,482	642 (0.59)	0.81	-6 (-0.93)
	금융 및 보험업	778,105	358 (0.35)	0.05	777,764	400 (0.37)	0.05	42 (11.73)
	기타의 사업	10,058,930	37,505 (36.66)	0.37	10,239,876	41,811 (38.27)	0.41	4,306 (11.48)

주: 1) ()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산업별 비중임.

2) 기타의 사업에는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1) 추정의 원칙(2017년 9월) : 작업 기간·노출량 등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사업주 확인 제도 폐지(2018년 1월) :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을 필요로 한 제도를 폐지.
 적용 사업장 확대(2018년 7월) :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2천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총 3만 9,740개소)

- 2019년 제조업과 건설업을 재해자 규모별로 보면, 제조업은 5~49인에서, 건설업은 5인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 구체적으로 재해자는 제조업의 경우 5~49인에서 1만 4,391명(49.2%), 건설업은 5인 미만에서 1만 999명(40.4%)이었음.
 - － 제조업과 건설업 재해자의 70.3%, 80.5%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였음.

〈표 2〉 제조업, 건설업 재해자 수 규모별 현황

(단위: 명, %)

규모별	2018년		2019년		재해자 수 증감(증감률)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전 체	27,377(100.00)	27,686(100.00)	29,274(100.00)	27,211(100.00)	1,897(6.93)	-475(-1.72)	
규모별	5인 미만	5,892(21.52)	11,091(40.06)	6,177(21.10)	10,999(40.42)	285(4.84)	-92(-0.83)
	5~49인	13,855(50.61)	11,694(42.24)	14,391(49.16)	10,905(40.08)	536(3.87)	-789(-6.75)
	50~99인	2,368(8.65)	1,553(5.61)	2,460(8.40)	1,674(6.15)	92(3.89)	121(7.79)
	100~299인	2,203(8.05)	1,912(6.91)	2,424(8.28)	2,083(7.65)	221(10.03)	171(8.94)
	300~999인	789(2.88)	1,141(4.12)	925(3.16)	1,249(4.59)	136(17.24)	108(9.47)
	1,000인 이상	2,270(8.29)	295(1.07)	2,897(9.90)	301(1.11)	627(27.62)	6(2.03)

주: ()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규모별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2019년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 유형에서는 각각 끼임(7,701명, 26.3%),²⁾ 떨어짐(8,565명, 31.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 － 제조업은 끼임(7,701명, 26.3%), 업무상 질병(5,590명, 19.1%), 절단·베임·찢림(2,768명, 9.5%) 순으로 재해가 발생했으며, 건설업은 떨어짐(8,565명, 31.5%), 넘어짐(4,121명, 15.1%), 물체에 맞음(2,959명, 10.9%) 순으로 발생했음.
 - － 재해 정도는 제조업에서 91~180일(1만 722명, 36.6%), 건설업에서 91~180일(1만 286명, 37.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음.

2) 최근 4년간(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 사고(272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의 대부분은 수리 등 비정형 작업 중에 또는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다. 기인물별로는 벨트컨베이어(18건), 천장크레인(17건), 지게차(17건) 순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 방호설비 설치대상 132건 중 방호설비 미설치로 인한 사망은 115건이었다(박재희 외(2021),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표 3〉 제조업, 건설업 재해 유형별 및 재해 정도(요양기간)별 현황

(단위: 명, %)

		2018년		2019년		재해자 수 증감 (증감률)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건설업
전 체		27,377(100.00)	27,686(100.00)	29,274(100.00)	27,211(100.00)	1,897(6.93)	-475(-1.72)
재해 유형 별	떨어짐	2,279(8.32)	9,191(33.20)	2,319(7.92)	8,565(31.48)	40(1.76)	-626(-6.81)
	넘어짐	2,747(10.03)	4,083(14.75)	2,900(9.91)	4,121(15.14)	153(5.57)	38(0.93)
	깔림·뒤집힘	595(2.17)	793(2.86)	638(2.18)	716(2.63)	43(7.23)	-77(-9.71)
	부딪힘	1,978(7.23)	2,248(8.12)	2,263(7.73)	2,156(7.92)	285(14.41)	-92(-4.09)
	물체에 맞음	2,095(7.65)	3,181(11.49)	2,138(7.30)	2,959(10.87)	43(2.05)	-222(-6.98)
	무너짐	89(0.33)	313(1.13)	108(0.37)	360(1.32)	19(21.35)	47(15.02)
	끼임	7,821(28.57)	2,206(7.97)	7,701(26.31)	2,096(7.70)	-120(-1.53)	-110(-4.99)
	절단·베임·찢림	2,679(9.79)	2,849(10.29)	2,768(9.46)	2,856(10.50)	89(3.32)	7(0.25)
	화재·폭발·파열	217(0.79)	162(0.59)	212(0.72)	111(0.41)	-5(-2.30)	-51(-31.48)
	교통사고	397(1.45)	209(0.75)	442(1.51)	178(0.65)	45(11.34)	-31(-14.83)
	무리한 동작	762(2.78)	751(2.71)	905(3.09)	764(2.81)	143(18.77)	13(1.73)
	업무상 질병	4,419(16.14)	1,200(4.33)	5,590(19.10)	1,913(7.03)	1,171(26.50)	713(59.42)
기타	1,299(4.74)	500(1.81)	1,290(4.41)	416(1.53)	-9(-0.69)	-84(-16.80)	
요양재해자		27,377(100.00)	27,686(100.00)	29,274(100.00)	27,211(100.00)	1,897(6.93)	-475(-1.72)
재해 정도	사망자	472(1.72)	570(2.06)	492(1.68)	517(1.90)	20(4.24)	-53(-9.30)
	6개월 이상	7,324(26.75)	7,783(28.11)	7,835(26.76)	7,981(29.33)	511(6.98)	198(2.54)
	91~180일	10,231(37.37)	10,761(38.27)	10,722(36.63)	10,286(37.80)	491(4.80)	-475(-4.41)
	29~90일	7,096(25.92)	6,430(23.22)	7,819(26.71)	6,478(23.81)	723(10.19)	48(0.75)
	4~28일	2,202(8.04)	2,048(7.40)	2,347(8.02)	1,870(6.87)	145(6.58)	-178(-8.69)

주: () 안은 전체 재해자 수 대비 규모별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대책으로 2020년 1월 직장 복귀 지원금을 인상했고 대체인력 사업장을 50인 미만으로 확대함.

- 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재 노동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2003년 도입되었으나 2006년 이후 지원금 인상이 없었음.
- 2020년 1월부터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는 80만 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 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 원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음.³⁾

3) 과거 산업재해 노동자는 직장 복귀 지원금으로 장해등급 1~3급 월 60만 원, 4~9급 월 45만 원, 10~12급 월 30만 원을 받아 왔다(2020년 1월 1일 이전).

-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였음.
 - 지원 금액은 대체노동자 임금의 50%(월 60만 원 한도)이며 최대 6개월간 지원함.⁴⁾
 - 개선된 산업재해 대책으로 산재 노동자의 원직장 복귀를 돕고, 영세사업장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1년 2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패트롤 현장 점검⁵⁾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향후 제조업과 건설업 재해자 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현장 점검은 과거보다 점검 횟수(기존 6만 회에서 7만 회로 늘림)를 늘리고 패트롤 전용 차량을 확대(기존 108대에서 404대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제조업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대 위험 기계·기구⁶⁾ 보유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임.
 - 건설업에 대해서는 120억 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 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 작업(비계와 작업발판 작업, 철골과 트러스 작업, 지붕과 대들보 작업, 달비계)에 집중하기로 했음.
 - 안전보건공단은 점검 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미개선 시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하기로 함. **KLI**

조규준(동향분석실 연구원)

- 4) 지원 조건으로 산재 노동자의 경우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대체근로자는 산재 노동자 요양 기간 중 신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 5) 패트롤 현장 점검은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3대 안전 조치인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끼임 위험 방지 조치, 필수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안전신문, 2021. 2. 3).
- 6) 10대 위험 기구는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 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을 말한다.